

제347회 임시회  
2016. 4. 27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박종규 의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4월 18일
- 회부일자 : 2016년 4월 19일

3. 개정이유

- 충북발전연구원의 명칭을 “충북연구원”으로 변경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 영역의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, 농업, 문화, 자치, 디자인 등 포괄적인 분야의 종합적 조사·연구를 수행하는 충북지역 종합연구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,
-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이사추천 및 재산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그 밖의 연구원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기관명칭(충북발전연구원 → 충북연구원)변경에 따른 조례명 및 자구 수정 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)
- 연구원 사업에 대한 규정 (안 제3조)
- 이사의 추천 및 임명에 대한 규정 (안 제4조)
- 연구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 (안 제7조)
- 연구원에 대한 연구·조사 우선 위탁 검토 규정 (안 제8조)

## 5. 검토의견

- 충북발전연구원은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, 충청북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된 제 부문을 체계적으로 조사·분석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통해 충북지역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- 동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이사의 추천 및 재산운영, 관리에 대한 조문을 보완하고, 충북발전연구원 정관 개정으로 연구원 명칭이 “충북발전연구원”에서 “충북연구원”으로 변경된 것을 포함, 그 밖에 연구원의 사업, 연구원 분원 설치 근거 등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을 위한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 - 조례 제명, 안 제1조, 제2조, 제5조에서 “충북발전연구원”을 “충북연구원”으로 변경함.
  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보면, 지방연구원의 명칭은 정관 포함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, 변경된 “충북연구원” 명칭은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쳤기에 법적 문제가 없으며,
  - 지방자치단체 초기에는 연구원의 주요과업을 지역개발과 발전에 두었으나, 현 시점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부문에 대한 연구영역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, 연구원 명칭 변경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.
    - ※ 명칭변경 연구원(6개) : 서울, 경기, 대구경북, 충남, 전북, 광주전남

- 또한, 조례 제명은 목적 규정에 맞춰 “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에서 “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함.
- 안 제3조에는 연구원의 수행 사업을 규정하고,
  - 안 제4조에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이사의 추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산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문으로,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기금 설치와 운영경비에 대해 규정함.
  - 안 제7조에는 도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연구·조사 등 지원을 위한 연구원 분원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8조에는 도지사 및 시장·군수가 연구·조사 업무 위탁 시 연구원에 우선 위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연구원의 경제적 자립 및 연구수행 능력을 강화토록 하였음.
  - 안 제9조에는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강구를 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하여, 연구원의 경영쇄신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음.
- 동 조례안은 연구원이 제 역할 및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